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58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1204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0.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538,900원, 지방교육세 4,144,250원, 농어촌특별세 2,781,730원 및 가산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30,79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구 지방세특레제한법"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시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종을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2016. 10. 28.로 보아야 하고, 위 사업계획변경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2014. 6. 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16. 4. 22.경 법인등기부의 목적사항에서 '농산물 재배, 생산업', '기능성식품 제조업' 등을 삭제하고 대신 '테이프류 제조 및 판매업', '종이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부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그 무렵 위 변경사항이 등기되었던 점,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업종을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던 점, △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 취득시의 업종인 '인삼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삼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로 위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삼식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단서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면제받았던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창업 해당 사업인 '인삼식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재산을 해당 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인삼식품 제조업'에 관하여 상임고문을 위촉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H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인삼경작확인서를 받고 홍삼·홍삼박(홍삼 농축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3월경에는 인삼·홍삼 건조실이나 인삼 가공 기기, 냉동창고 등에 관한 견적서와 인삼식품 가공·제조를 위한 공장 도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인삼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준비를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로 인삼식품 가공·제조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위 토지를 '인삼식품 제조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이후인 2017. 2. 28. 업종을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2017. 3. 2. 승인을 받은 후,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있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로 설립된 2012년 2월경 이후, 2012. 4. 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여러 해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없다가(특히 인삼식품 제조업 관련 매출신고내역은 없다), 위와 같이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이후인 2017. 4. 25.에야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인삼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따른 매출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